의안 번호 668

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○ 제 출 일 자 : 2008. 11. 13(목)

O 제 출 자: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○ 위원회회부 : 2008. 11. 13(목)

O 위원회심사 : 2008. 12. 1(월)

2. 제안이유

○ 신설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고 사용료 의 감면규정을 세분화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주민편 의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체육시설의 사용신청·허가 등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함 (안 제6조제2항과 제3항)
- "사용료 징수대상"에 "인조잔디축구장"을 추가(안 제7조제1항제3 호)
- "사용료의 감면기준"을 구체적으로 규정(안 제8조)
 - ㅇ 사용료 면제

- 국가 ·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각종 행사
- 구 단위 체육행사 등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ㅇ 사용료 감면

- 불우청소년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국가보훈대상자, 유공자(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), 장애인: 50/100
- 12세 이하의 어린이, 청소년(13세~18세), 65세 이상의 노인 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: 30/100
-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중 "인조잔디축구장" 사용료 규정을 신설 (안 별표1)

[별표 1] 체육시설 전용사용료(제7조제2항 관련)

(단위:원)

구 분		평일	토·일·공휴 일	비고
테니스장	코트당	10,000		3시간 기준 사용료임
	월 자유사용료	15,000		1인 기준 사용료임
인조잔디축구장	체육경기	25,000	40,000	2시간 기준
	체육강외	50,000	80,000	2시간 기준

4. 근거법규

- ○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조
- ○「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

5. 참고사항

○ 입법예고 결과 : 의견 없음(2008. 10. 22 ~ 11. 11)

6. 검토의견

-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
 - 기존 조례에서 대화강둔치 인조잔디 축구장이 준공됨으로 인하여
- 기존 체육시설에다 "인조잔디 축구장"을 추가하였으며 체육시설 의 이용방법 및 사용신청 허가 등의 조항을 구체화 하였 고
-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시간당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의 가산한 금액을 100분의 50으로 증액하므로 약간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사용료의 감면 조항에서 사용료 면제범위를 구체적으로 확대하였으므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
- 다만, 제16조에 위탁할 수 있는 단체를 "시설물을 직접 이용하는 체육관련 단체"에서 "시설물을 이용하는 체육관련 단체"로 "직접"이란 용어를 삭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.

관계법령발췌

체육시설의 **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** [일부개정 2008.3.21 법률 제8976호]

제4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·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.